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청년정책기능강화를 위한 9개
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
대통령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정책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, 9개 중앙행정기관(기획재정부·교육부·행정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·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·중소벤처기업부·금융위원회)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별정직 6급 상당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등 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. 2. ~ 9. 5.)

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082”를 “1,083”으로 하고, 별정직 계 “7”을 “8”로 하며,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“6”을 “7”로 한다.

대통령령 제3274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부분 중 “1,082”를 “1,083”으로, “1,084”를 “1,085”로 한다.

제2조(「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647”을 “648”로 하고, 별정직 계 “4”를 “5”로 하며,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“3”을 “4”로 한다.

제3조(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의2.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·조정 및 지원

제14조제3항제68호의2를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635”를 “1,636”으로 하고, 별정직 계 “7”을 “8”로 하

며,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“6”을 “7”로 한다.

제4조(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681”을 “682”로 하고, 별정직 계 “4”를 “5”로 하며,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“3”을 “4”로 한다.

제5조(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863”을 “864”로 하고, 별정직 계 “5”를 “6”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“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5”를 신설하고, “3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4”를 삭제한다.

제6조(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617”을 “618”로 하고, 별정직 계 “4”를 “5”로 하며,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“3”을 “4”로 한다.

제7조(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999”를 “1,000”으로 하고, 별정직 계 “7”을 “8”로 하며,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“6”을 “7”로 한다.

제8조(「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482”를 “483”으로 하고, 별정직 계 “4”를 “5”로 하며,

그 다음에 “고위공무원단 1”을 신설하고, 그 다음에 “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4”를 신설하며, “고위공무원단(장관정책보좌관) 1”을 삭제하고, “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(장관정책보좌관) 1”을 삭제하며, “비서(7급 상당) 1”을 삭제하고, “비서(9급 상당) 1”을 삭제한다.

제9조(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29”를 “230”으로 하고, 부위원장(차관급) 1 다음에 “별정직 계 1”을 신설하며, 그 다음에 “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기획조정실장) ①·② (생략)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. 1. ~ 15. (생략) <u><신 설></u> 16. ~ 39. (생략)	제7조(기획조정실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15. (현행과 같음) <u>15의2.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·조정 및 지원</u> 16. ~ 39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지방자치분권실) ①·② (생략)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68. (생략) <u>68의2.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·조정 및 지원</u> 69. ~ 84. (생략)	제14조(지방자치분권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68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69. ~ 84. (현행과 같음)

대통령령 제3274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 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,083</u>	<u>1,085</u>	+2
·	·	·	
·	·	·	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4]

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(제41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863</u>	<u>864</u>	+1
·	·	·	
·	·	·	
별정직 계	<u>5</u>	<u>6</u>	+1
고위공무원단	1	·	
<u>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</u>			
<u>이하</u>	<u><신 설></u>	<u>5</u>	+5
<u>3급 또는 4급 상당 이하</u>	<u>4</u>	<u><삭 제></u>	-4
·	·	·	
·	·	·	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(제2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482</u>	<u>483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별정직 계	<u>4</u>	<u>5</u>	+1
<u>고위공무원단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</u>			
<u>이하</u>	<u><신 설></u>	<u>4</u>	+4
<u>고위공무원단(장관정책보</u>			
<u>좌관)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<u>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</u>			
<u>(장관정책보좌관)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<u>비서(7급 상당)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<u>비서(9급 상당)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•	•	•	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9